

[일련번호 : 15]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풍수해대책 비상근무자 수당 지급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풍수해 대책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 근무자 운영 수당 교부 알림」 등에 따라 풍수해 대책 비상근무자 수당을 지급·관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치수과에서 각 동 주민센터로 시달한 「풍수해 대책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근무자 운영수당 교부 알림」 공문 및 <풍수해대책 근무자 수당·대체휴무 운영요령>에 따르면 여비(교통비 10,000원)는 평일 23시~익일 07시 및 주말·공휴일 비상소집 응소 시 응소대장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고, 발령시점 이전부터 근무(초과근무 포함)중인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정상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보강근무를 한 경우 당직수당(60,000원)과 대체휴무를 지급하며, 당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풍수해 대책 비상근무자에 대하여 정상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보강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풍수해 보강근무자 당직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중복지급 내역

연번	성명	비상소집일시 (응소대장 근거)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내역	비고
1		2024-07-23(화) - 08:00~13:00 - 20:00~익일 08:00 (보강근무) (20:00 응소)		4시간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풍수해 보강근무 당직수당과 중복지급한 초과근무수당 46,41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붙임〕 참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고, 풍수해 대책 비상근무자 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붙임] 대상자별 초과근무수당 환수 금액 - 세부내역 별도송부